

의안번호	제 115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월 일 (제 297 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1년 1월 10일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연월일 : 2011. 1. 1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근거를 신설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검정고시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응시생의 학력취득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신설함 (안 제4조제3호 단서)
- 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종전 10,000원에서 무료로 함(안 별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10. 12. 10. ~ 12.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1.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수수료	1건	300	
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료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3. 검정고시수수료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인당	10,000	
	2. 성적증명서	1통	300	
	3. 합격증명서	1통	300	
	4. 과목합격증명서	1통	300	
4. 제증명수수료	1. 신원에 관한 증명			
	가. 재직,경력,퇴직에 관한 증명	1건	300	
	나.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	1건	300	
	다. 각종 수상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각종 고시, 시험(합격)증명	1건	300	
	마. 기타 신원에 관한 증명	1건	300	
	2. 학적에 관한 증명			
	가. 입학 및 합격에 관한 증명	1건	300	
	나. 재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다.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퇴학 및 제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마. 수료에 관한 증명	1건	300	
	바. 졸업에 관한 증명	1건	300	
	사. 성적 증명	1건	300	
	아. 생활기록부(학적부) 증명	1건	300	
	자.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3.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가. 물품(용역)관련 각종 사실, 실적 증명	1건	300	
	나. 공사관련 각종 사실, 실적증명	1건	300	
	다.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학비 감면 증명	1건	300	
	마. 원천징수에 관한 증명	1건	300	
	바. 기타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1건	300	
	4.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1건	3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다만, <u>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u></p>

##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2)

###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와 관련)

[현행] (단위: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3. <u>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u>	1. <u>응시수수료</u>	1인당	10,000	- <u>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u>
	2. 성적증명서	1통	300	<u>고시규칙 제12조</u>
	3. 합격증명서	1통	300	- <u>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u>
	4. 과목합격증명서	1통	300	<u>고시규칙 제17조</u>

[개정안] (단위: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3. <u>검정고시수수료</u>	1. <u>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u>	1인당	10,000	<삭 제>
	2. 성적증명서	1통	300	
	3. 합격증명서	1통	300	
	4. 과목합격증명서	1통	300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응시수수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6.8, 2007.10.1>

[전문개정 1991.10.8]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2조 (수수료 <신설 1986.2.17>)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